
**불법촬영물등의 처리에 관한
2020년도 투명성 보고서**

2021. 1.

(주) 더블미디어

『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』
제64조의5(투명성 보고서 제출의무 등)에 따라 정보통신
서비스를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
투명성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.

2021년 1월 20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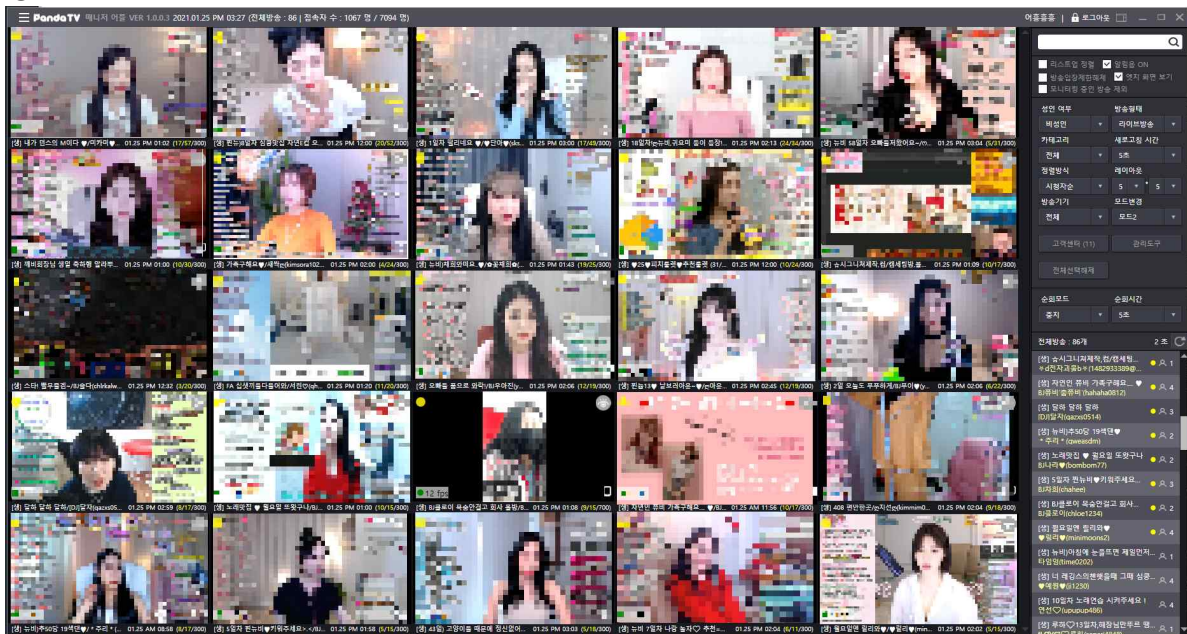
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에 관한 2020년도 투명성보고서

1. 일반 현황 ['20년 12월말 기준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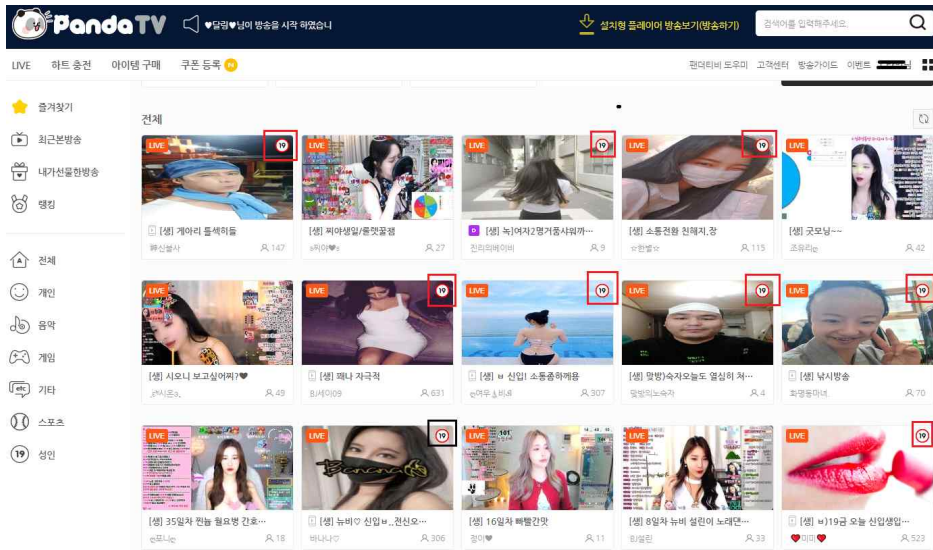
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	주식회사 더블미디어
대표자	박효창, 이병근
주 소	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609, 에이동 3층 (논현동,팍스타워)
정보통신 주요서비스/ 3개월 일일평균이용자	팬더티비 실시간 개인방송 서비스 / 약 20만명
정보통신서비스부문 연평균 매출액	약 167억
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	이병근 대표

2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를 위한 일반적인 노력

-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위한 시스템 : 2019 ~ 현재
- 실시간 방송 모니터링팀 운영 : 2019 ~ 현재



- 운영팀 전담부서 및 고객센터(1668-1682) 운영 : 2019 ~ 현재
- 불법촬영물 등 신고 안내 온라인 페이지 운영
(<https://www.pandalive.co.kr/bbs/notice>) : 2019 ~ 현재
- 청소년 유해물 표시 및 사이트 가입제한 실시 : 2020 ~ 현재



- 불법촬영물 유통방지를 위한 팝업 안내 및 캠페인 실시
(<https://www.pandalive.co.kr/bbs/event/info/287891>) : 2020 ~ 현재



3. 불법촬영물등의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

- '20.12.10. ~ 31. 신고접수 및 처리건수 없음
- 자체 모니터링 팀 운영

구분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계		
신고 접수	신고·삭제 요청인	피해자 등												0	0	
		기관·단체													0	0
	사유	소계													0	0
		불법촬영물													0	0
		허위영상물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0	0
처리 결과	자체삭제·접속차단													0	0	
	해당없음													0	0	
	방심위 심의요청	심의삭제·차단													0	0
		해당없음													0	0
	각화 등														0	0
	소계														0	0
	삭제·차단 사유	불법촬영물													0	0
허위영상물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														0	0	
소계														0	0	

※ 요청사유 및 삭제·차단 사유는 중복계상

4.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에 관한 절차

- (방송자 방송규정)

① 만19세 이상 성인만 방송이 가능합니다.

② 과도한 노출, 음란물 상영, 초상권 침해, 타 방송자 비차 및 욕설, 자살행위 묘사, 계좌 후원 요구 등 방송에 부적합한 방송자는 바로 방송 제재 대상이 됩니다.

③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비하, 인종/지역/성/장애인 차별, 청소년 보호법 위반, 정치 선동성 채팅은 제재의 대상이 되며 채팅은 자동 차단됩니다.

④ 불법 녹화 및 캡처 프로그램 또는 녹화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방송화면이 블라인드 쳐져 있습니다.

- (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대한 절차)

① 불법촬영 등 유통방지(실시간 방송) 신고 또는 삭제요청이 있을시 유통방지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불법 촬영물 등으로 확인되면 즉시 접속차단을 한다.

② 해당 방송자에게 경고문구 등 주의 안내 쪽지 및 메시지를 보낸다.

③ 해당 방송자가 방송을 못하도록 조치한다.

④ 해당 방송의 촬영물을 삭제한다.

팬더티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규칙 「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」을 준수합니다.
 건전한 방송을 위하여 팬더티비의 방송기준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방송의 기준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1. 저학년 시청 방송

- ① 저학년이 이해되지 않는 스포츠 중계, 영화, 드라마와 같은 방송물체
- ②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영상 작품 시(예:고복)에는 노출분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 (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연상케 하는 행위는 법과 사회규범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제한)
- ③ 공한 언어 타인의 사진, 영상 등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 할행하는 내용

2. 음란물 및 노출방송

- ① 음란(포르노)아동물 등영상이나 혐오스러운 행위나 사진, 동영상 등을 방송
- ② 방송 중에 과도한 신체 노출을 하는 경우
- ③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 작품 시(예:고복)에는 노출분위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 (미성년자를 성적대상으로 연상케 하는 행위는 법과 사회규범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제한)
- ④ 위의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아예에 명시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(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)1호에서 정한 유류이 금지되는 내용

3. 사기, 욕설 방송

- ① 제과 입골 요구 등의 사기 행위
- ② 비방할 목적으로 공언하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살 또는 취위사살을 교사하여 타인의 영여를 훼손하는 방송

4. 특정단체, 지역, 종교, 인종차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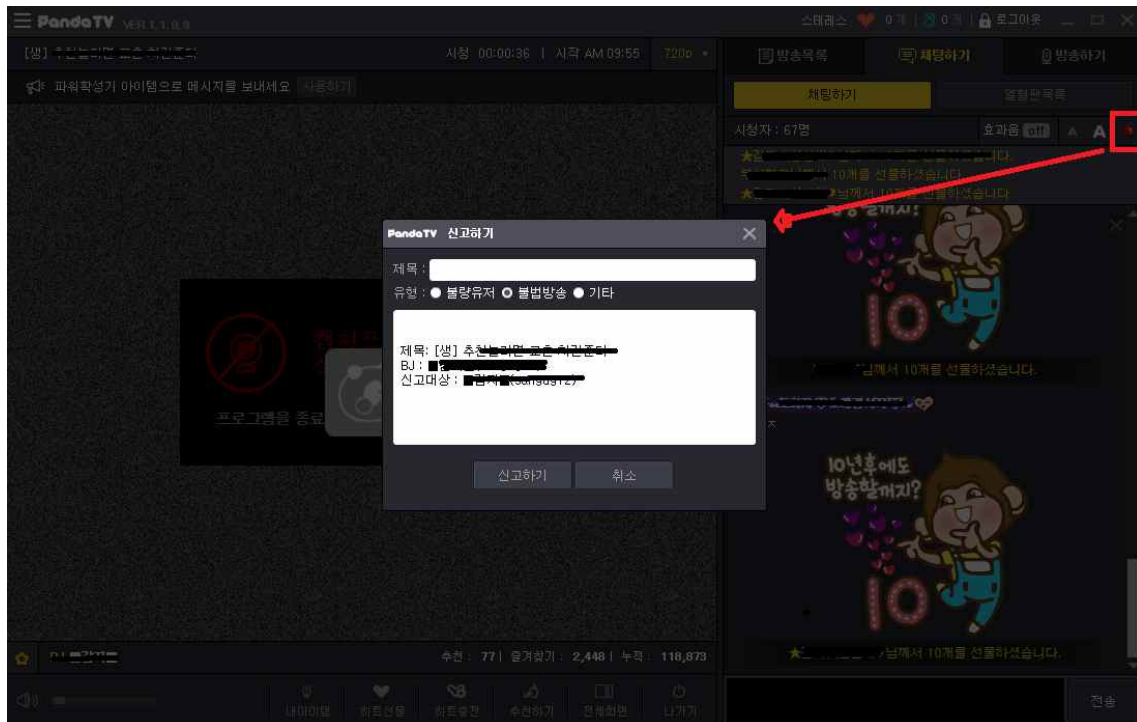
- ① 차별등을 목적으로 언급하거나 비하 및 견해를 조장하는 내용
- ② 이종이나 신분, 사회적 지위, 인격 등에 해를 끼쳐 피력을 입하는 내용

5. 범죄 및 범죄에 위협되거나 팬더티비의 영여를 방해하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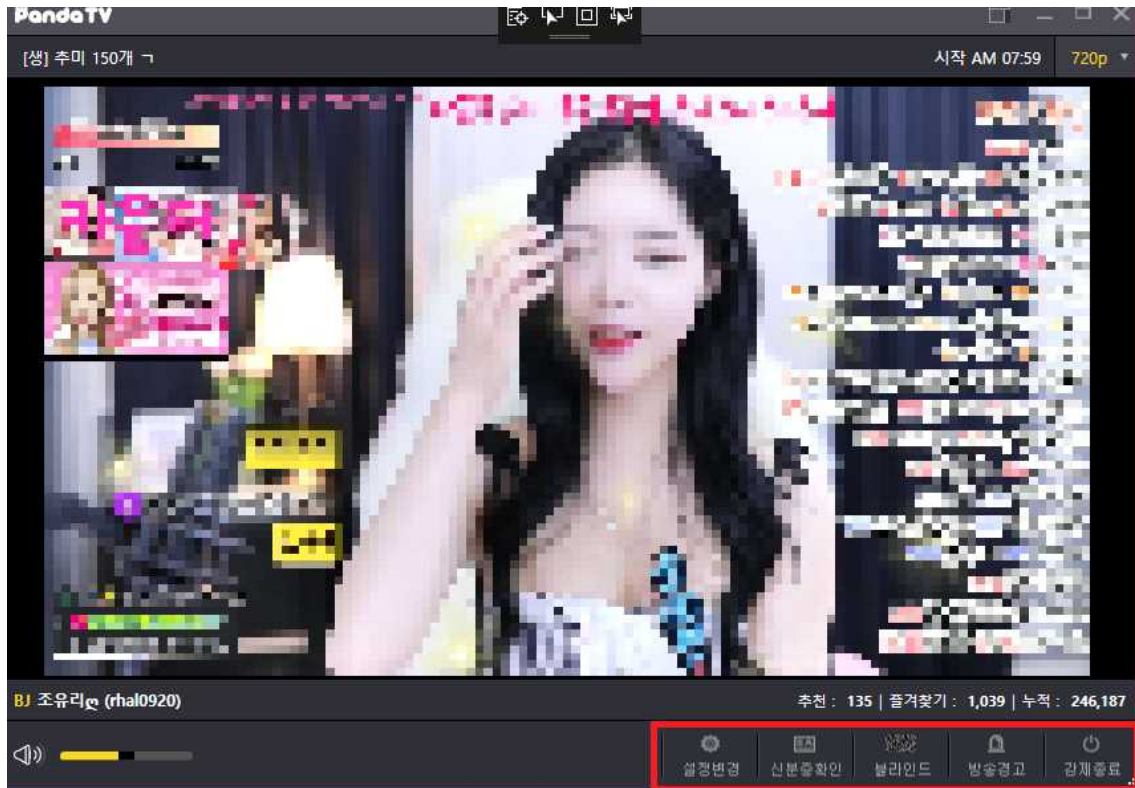
- ① 일반 시계제 내용
- ② 방송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팬더티비 내부 규정에 의해 서비스 중지 등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
- ▶ 1회 적발시(노점)
- 원칙: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1일 (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)
- 예외: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(예: 저학년 시청 등)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,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 (중징계 내용의 예: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)
- 기준에 환경 선량한 하등의 경우 기준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15일간 추가 지급유예
- 환경선량을 하지 않은 하등이 있는 경우에 방송금지일부터 60일간 환경선량 불가
- 방송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당일에 산출 받은 하등의 경우 환경선량 불가하여, 해당 하등 환경안은 선결한 연체에 기본, 후임하겠습니다.
- ③ 2회 적발시(노점)
- 원칙: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3일 (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)
- 예외: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,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 (중징계 내용의 예: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)
- 기준에 환경 선량한 하등의 경우 기준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30일간 추가 지급유예
- 환경선량을 하지 않은 하등이 있는 경우에 방송금지일부터 60일간 환경선량 불가
- 방송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당일에 산출 받은 하등의 경우 환경선량 불가하여, 해당 하등 환경안은 선결한 연체에 기본, 후임하겠습니다.
- ④ 3회 적발시(노점)
- 원칙: 경고 및 이용정지 최소 7일 (위반 사실이 중할 경우 정지기간이 늘어날 수 있음)
- 예외: 위반 사실이 중 할 경우 자체 심의 위원회에 회부, 중징계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. (중징계 내용의 예: 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)
- 기준에 환경 선량한 하등의 경우 기준 지급예정일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60일간 추가 지급유예
- 환경선량을 하지 않은 하등이 있는 경우에 방송금지일부터 60일간 환경선량 불가
- 방송기준을 위반하여 적발된 당일에 산출 받은 하등의 경우 환경선량 불가하여, 해당 하등 환경안은 선결한 연체에 기본, 후임하겠습니다.
- ⑤ 4회 이상 경고(인) 팬더티비 계정이 해지되며, 계정 해지 시 향후 새 계정을 생성하여도 팬더티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.
- ▶ 중징계 조치(영구정지 및 회원자격 박탈)
- 해당 사이트에서 방송 시 방송기준을 위반하여 영구적으로 회원자격이 박탈된 경우 모든 방송개설과 사정이 전연 금지됩니다. 또한 해당 플랫폼 이하 연동된 모든 서비스에도 입찰 적용됩니다.
- 중징계 조치가 취해진 회원이 타 연동 서비스 플랫폼에서 방송개설 또는 시청 시 경고없이 강제 퇴장 조치가 차단됩니다.

<참고>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(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) 1호
 제8조(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)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침해하 할행우려가 있는 내용의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1. 사회통념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칙심을 행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 가. 남녀의 성기, 음근 또는 항문 등 특정 신체 부분 또는 성적 행위를 노출적으로 표현 또는 묘사하는 내용
 나. 자극적이고 혐오스런 성적표현 및 남녀 성기에 관한 언어 및 비속어를 사용하여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
 다. 강간, 음란, 성추행 등 성적학행위를 노출적으로 묘사하는 내용
 라. 성행위와 관련된 신음소리 등을 공히 자극적으로 묘사하는 내용
 마. 구강성행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노출적으로 묘사하는 내용
 바. 변태적인 지위행위 및 성기애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
 사. 수근(手根), 시간(時根), 혼음(混音), 근접상기(近接相), 가합성(加合性) 음란물, 평음(平音) 등 비정상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
 아. 아동 또는 청소년을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직간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한 내용
 자. 그 밖에 일반인의 성적 수칙심을 침해하 할행우려가 있는 정보

(시청자 화면 예시)



(모니터링 요원 화면 예시)



※ 실시간으로 방송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.

○ (기타 운영관련 사항)

유통방지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.

- ①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를 위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시스템이 항상 운영될 수 있도록 일일 점검과 관련 인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.
- ② 불법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기술적 조치의 운영.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고, 3년이상 보관한다.
- ③ 불법촬영물 등 유통 신고서 및 해당 결과에 관현된 문서를 3년 이상 보관한다.

5. 불법촬영물등의 유통방지 책임자

구 분	정	부
성 명	이병근	장준영
부 서	운영팀	운영팀
직 책	대표	팀장
지정일	2020. 12. 18.	2020. 12. 18.

6.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교육

구 분	교육일	교 육 명	참 석 자	시 간	교육기관
교육참여	2020-12-11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	이병근 대표	2시간	자체교육
교육실시	2020-12-12	불법촬영물 사례 및 신고	장준영 팀장	1시간	자체교육
교육실시	2020-12-18	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제도 안내	운영팀6명	2시간	자체교육
교육실시	2020-12-19	불법촬영물 사례 및 신고	운영팀6명	1시간	자체교육